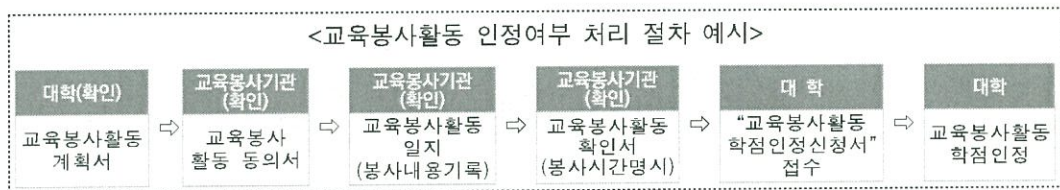


- ㉔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,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서,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,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.
- ㉕ 학교현장실습 지원(협력)학교는 실습 대상 인원 및 지원(협력)학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학교현장실습생을 수용하고,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실제수업 또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5) 교육봉사활동의 운영

- ①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·초·중·고학생(학교 밖 청소년 포함)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.
 - ※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,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각 대학에서 결정함
 - ※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(예시: 노인 문예교실)
- ②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.(고시 제6조9항)
 - ㉑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
 - ㉒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㉓ 「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
 - ㉔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 - ㉕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·중등학교
 - ㉖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
- ③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.
- ④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.
- ⑤ 교원양성기관은 교육봉사활동 실시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활동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의 인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

- ⑥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무시험검정은 교육봉사활동의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되, 구체적인 사항은 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.
- ⑦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학점인정 방법은 이수학점을 부여하되,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.